



주차장법증개정법률(2003. 12. 31 공포)

- 개정내용은 2004. 7.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 주차장화보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등 지정목적 달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내지 제4조의3 신설).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권고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게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
-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제도를 도입함(법 제19조의14 내지 제19조의19 신설).
- 마.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법 제32조 신설).

주차장법시행령증개정령(2004. 2. 9 공포)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2004. 5. 10부터 시행, 그밖의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가.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노

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종전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향조정함(안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주차장법시행규칙증개정령 (2004. 2. 7 공포)

- 개정내용은 공포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평행주차 형식인 경우에는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하고, 청색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에는 상업지역에 한하던 것을 상업지역외에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되, 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